

	<b>교원장의담당시수 및 강의료지급 규정</b>	표준번호	교무행정 6-6-1
		제정일자	1994. 9. 1
		개정일자	2019. 8.2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정규교과 담당 교원의 1주간 담당 수업시간 수(이하 “시수”라 한다)와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 및 시수)** ①이 규정은 정규수업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강사 등의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②시수는 이론수업, 실험·실습수업, 실기수업 구분 없이 1시간을 단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과목 운영 특성상 시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는 총장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시수 기준을 따로 정한다.

③임상실습 및 현장실습 교과목 시수 기준은 [별표1]에 따른다.

**제3조(강의구분)**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초과강의 :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담당하는 수업
2. 시간강의 :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

**제4조(책임시수)** ①본 대학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기준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전임교원이 파견, 특별과제 수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교원의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강의시간 제한)**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강사 등 교원별로 담당할 수 있는 강의시간 및 제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타대학 수출강에 대한 승인)** 본 대학의 교원이 타 대학에 수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미달시간)** 전임교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미달된 시간 수는 다음 학기의 책임시수에 합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

**제8조(강의료 지급)** ①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료를 지급한다.

1. 전임교원이 초과강의를 수행한 경우 초과한 시수에 대하여 초과강의료 지급한다.
2.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강의를 수행한 경우 강의한 시수에 대하여 시간강의료를 지급한다.

②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강의료 계산)** 본 대학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.

1. 강의료는 교시당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임상실습 강의는 인정시수율 기준으로 계산한다.
2. 강의료는 주단위로 시수를 계산한다. 단 학기말 종강이 있는 주는 1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.

**제10조(강의료 지급기준액)** ①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 학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

정한다.

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승인을 통해 강의료 지급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외국인, 명예교수, 국내외 저명인사가 강의한 경우
2. 타 지역 거주 교원이 출강을 위해 숙박비 또는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
3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**제11조(보충강의) 휴결강의 경우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.**

**제12조(강의료 지급일) 강의료는 특별강의료를 제외하고는 당월 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당월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강의료를 지급한다.**

**부 칙**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학교장 명칭변경) 학칙 개정(2009.2.20자)으로 본 규정 중 학교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계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15.3.1.자로 계열이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의 “계열 및 계열 부장” 명칭을 삭제한다.

부 칙(2019.8.23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임상실습 및 현장실습 교과목 시수 기준

구분	대상	내 용
임상실습 교과목	간호학과	<p>「간호학과 실습시행지침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임상실습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편성 및 시수를 적용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임상실습 교과목별 실습단위는 학생 8명 이하로 편성</li> <li>2. 수업지도시간 : 임상실습시간의 10% 이상 배정</li> <li>3. 시수인정 : 수업지도시간 / 15주</li> <li>4. 인정된 시수에 대하여 강의료 계산</li> </ol>
현장실습 교과목	개설 전 학과	「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라 운영되는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